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58호

의 안 명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탈소등록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20. 6. 22.

주 문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탈소등록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2020. 6.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6
1.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말소등록 제한	6
2. 멸실인정 차량은 압류대상물로서 실효성 부족	9
3. 말소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한 국민고충 유발	10
IV. 개선방안	11
V. 조치사항 및 기한	12
[붙임] 관련 법령	13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 그러나, 차령(車齡) 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사실상 미소유(멸실) 차량이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압류 문제의 해결을 말소등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 반면,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없거나,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멸실된 차량은 압류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말소등록 가능
- 멸실인정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의 권리와는 무관
 - 차령이 초과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따른 실익이 전무
 - ※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멸실인정 차량 등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 이에 따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안 마련(12~1월), 기관협의(2~5월)

II. 제도현황

□ 자동차 등록관리

- (내용) 자동차가 제작되는 단계부터 폐차, 말소까지를 규정하는 제도로 자동차마다 주요제원 및 변동 상황을 등록원부에 기록관리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

-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년 말 기준 2,368만대

< 자동차 등록현황 >

(단위: 대, '19년 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3,124,157	1,395,183	1,190,154	1,635,323	676,281	673,899	565,639	5,765,692	163,33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82,700	837,602	1,118,117	929,061	1,056,239	1,446,262	1,721,503	596,215	

[자료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말소등록

- (신청)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된 자동차가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일부 사유*의 경우 할 수 있음)

< 말소등록 신청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 폐차를 요청,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車齡)이 초과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
- 자동차 수출
- 압류이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없는 차량 중 차량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 시·도지사는 말소등록 접수 시 압류촉탁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 교육·연구목적 또는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로 사용*

- 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해당 지자체장의 해체 사실 확인*
-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 확인*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
- 본인 소유 자동차를 도난,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 (직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도 별도로 규정

< 직권말소등록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시·도지사의 말소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 (현황) '19년 한 해 동안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약 134만대

< 자동차 말소등록 현황 >

(단위 : 대)

연도 \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전년대비 증감
2015	730,120	79,738	163,273	2,115	975,246	-
2016	768,899	74,154	177,467	2,072	1,022,592	47,346 (4.9%)
2017	843,642	72,290	201,810	2,873	1,120,615	98,023 (9.6%)
2018	895,543	68,845	201,007	3,144	1,168,539	47,924 (4.3%)
2019	1,010,975	73,259	249,036	3,634	1,336,904	168,365 (14.4%)

[자료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

- (개요) 자동차등록상 명의자가 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등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과태료(차량 정기검사·의무보험 가입 위반 등)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05.11월)

< 미소유자동차 발생 사유 >

-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차를 매매하였거나, 매매 후 차량 이전등록 미 실시
- 적법한 절차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인의 부탁 등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차를 가져간 경우 등

-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 (기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별도로 규정(대부분 유사)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예시) >

- ①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참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 ②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등)되는 경우
- ③ 장기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④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임의 폐차 추정)
- ⑤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

※ 위 사항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 인정

⇒ 각 지자체에서는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단,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외 동의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현황) '05년 제도시행 이후 전국의 멸실인정받은 차량은 143,394대, 이 중 실제 말소등록된 차량은 28,507대('20.3.25일 기준, 누적 합계)로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비율은 19.9%에 불과

(단위 : 대, %)

지역 \ 구분	멸실인정 차량 (A)	멸실인정 차량 중 말소등록된 차량(B)	말소등록 비율 (B/A, %)
총 합 계	143,394	28,507	19.9%
서울	24,252	5,170	21.3%
부산	6,435	1,440	22.4%
대구	6,598	902	13.7%
대전	4,249	484	11.4%
인천	9,114	1,178	12.9%
광주	3,677	516	14.0%
울산	2,132	367	17.2%
세종	594	126	21.2%
경기	44,433	7,051	15.9%
강원	4,845	852	17.6%
충남	7,428	1,922	25.9%
충북	4,986	1,140	22.9%
전남	5,409	2,027	37.5%
전북	4,350	1,206	27.7%
경남	6,120	2,086	34.1%
경북	7,653	1,763	23.0%
제주	1,119	277	24.8%

[자료 : 국토교통부]

Ⅲ. 문제점

1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말소등록 제한

○ 차량(車齡) 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압류해제 또는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지자체장의 멸실인정을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첨부 필요

* 압류능력을 축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 등

○ 사실상 미소유(멸실) 상태이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 문제 등의 해결을 말소등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장기 미소유 차량의 특성상 대포차로 악용되어 명의상 차량 소유자와 상관 없이 세금, 과태료 등이 체납된 사례도 다수 발생

(사례1) □□차량은 10년전 도난을 이유로, ◇◇차량은 12년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각각 멸실되어 대포차가 되었음. 대포차가 된 이후 불법 사용자에게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있는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임.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하려해도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말소가 안 된다고 함('19.12월, 국민신문고)

(사례2)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일명 '대포차'가 되어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져 있었음.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압류로 인해 말소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임('18.10월, 언론보도)

(사례3) 멸실인정된 차량에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 처리를 못하고 있음. 서울시 여러구청에서는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효력이 없다하며 압류를 풀어주고 다른 대체 재산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유독 00구청만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를 못 풀어준다고 하여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으니 해결해주시기 바람('18.8월, 청와대 국민청원)

- 반면, 차령 초과로 **환가(換價)가치가 없거나**,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차량**은 압류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말소등록 가능**
- 말소등록 신청 접수 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
 - ‘차령 초과’ 또는 ‘멸실’에 따른 말소등록과 ‘멸실인정’에 따른 말소등록 절차를 구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 부족

※ 상황별 예시

A차량		차령초과 (차령 15년)	세금, 과태료 15건 압류 미해결	→	말소등록 가능
B차량		화재로 멸실	세금, 과태료 10건 압류 미해결	→	말소등록 가능
C차량		멸실인정 (차령 20년+ 멸실 등)	세금, 과태료 10건 압류 미해결	→	말소등록 불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별 비교 >

구분	차령초과	멸실	멸실인정
내용	차령이 초과 되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 예) 승용차 11년 이상 등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멸실 된 경우	시·도지사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 할 경우 * 차령 초과, 최근 몇 년간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고려
이해관계인	동의 불필요 (통보로 같음)	동의 불필요	동의 필요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첨부
비고	명의상 소유자가 차량 보유	사건사고 증명서 필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발행)	명의상 소유자가 차량 미보유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및 제9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5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8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및 제9항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멸실인정 받은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행정의 지역 간 편차 유발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멸실인정 차량의 직권말소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고 있으나, 직권말소 한 사례(속초시)도 있음
- ※ 참고 : 법령 해석상 지자체로부터 멸실인정 받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법령 위반 소지 있음

< 지자체 사례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한 경우 >

- 멸실인정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더라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의 권리와는 무관**
 - 오히려,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 사실 등을 통보해 **다른 목적물에 대체 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
 - ※ ‘차령초과’ 또는 ‘멸실’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압류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
- 멸실인정 차량은 차령이 초과되어 재산적 가치(환가가치)가 없고,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으로 **압류에 따른 실익이 전무**
 - 차량 압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해당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

-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6호)에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근거 신설('20.3.24.개정)**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91-5)
 -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함에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국세징수법 통칙 24-0...5, 6)...**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어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당해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등록명의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과세권자)는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06.12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유권해석)
 - 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멸실인정 차량 등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 **마포구**, 생계형 체납 증가 상황 속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 미 운행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19.11월, 언론보도)
- **송파구**,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19.11월, 언론보도)

- 멸실인정을 받고도 압류문제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은 '05년 멸실인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1.5만대에 달함

※ 멸실인정 차량은 143,394대, 이 중 말소등록된 차량은 28,507대('20.3월 기준)에 불과

- 멸실사실을 인정받더라도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특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제약

※ 말소등록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파악됨

(사례)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멸실인정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통상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차량멸실인정서'를 해당관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 당해 차량은 소유재산으로 산정되어 영문도 모른 채 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월4.17%가 적용(일반차량은 월100% 적용)되나, 통상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어 소득환산액이 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멸실인정 차량'의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고충 유발

(사례)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및 저당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멸실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멸실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동산은 재산의 실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원부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실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상속여부 등에 대해 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19.5월, 국민신문고)

IV. 개선방안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 (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 개정

□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보완)

※ 접수 사실 통보 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보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개정(조문 신설)

현 행	개 선 (예시)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⑤ (생략)	(좌 동)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 동)
1. ~ 6. (생략)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좌 동)
(신 설)	⑦ 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 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⑦~⑧ (생략)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13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u> ⑧~⑨ (현행 제7, 8항과 동일) ⑩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제6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

IV. 조치사항 및 기한 등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과제 구분	조치사항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압류해제) 등 절차 생략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 개정
	☐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 ○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 접수 사실 등 통보 절차 신설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개정(조문신설)

☐ 조치기한 : 2021년 6월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効)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해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⑪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

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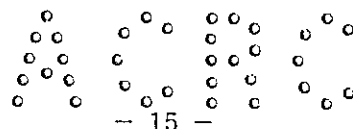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정 본 입 니 다 .

2020. 6. 24.

국 민 권 익 위 원



A C R C